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재량 확대 등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71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재량 확대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1. 6.
3. 회부연월일: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 및 포용적 학습 역량 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임용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Ⅲ. 검토의견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재량 확대 등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러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신규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5년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며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신규채용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⑩ (생략)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	⑪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며,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공개전형에 포함된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⑫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
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
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면 복수의 학교법인이 함
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공
개전형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에
게 공개전형 실시 장소, 감독관
과견 등에 대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시·도 교육감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⑬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법령 위반 행위를 알게 된 사
람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관할청은 이
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⑭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법
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은
그 임용권자에게 5년간 제10항
에 따른 공개전형에 필기시험

	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필기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현행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모두 공개전형으로 진행된다.

이 중 국·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제1차시험은 필기시험,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 평가로 진행하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제1차시험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해당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그 이후 시험은 임용권자 별로 실시함.

[표 1]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 비교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시험 실시기관	• 임용권자(교육부장관이 위임) － (공립) 시·도교육감 － (국립) 학교의 장이 시·도교육감 위탁 실시	• 임용권자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단, 필기시험은 해당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
응시자격	• 교사자격증 취득자	• 교사자격증 취득자
시험방법	• 공개전형 － 제1차시험: 필기시험 － 제2차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 평가	• 공개전형 － 제1차시험: 필기시험 － 제2차 이후 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함

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기준

자료: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제11조의3(응시자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내용 정리

현재 적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는 2차례에 걸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임.

당초 채용절차는 각 학교별 학교 장의 제청 또는 학교 장 제청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가 임용하는 방식이었으나,

(1차 개정) 2005년에 사립학교 운영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임면권자가 공개전형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해당 학교 소재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되었음.

(2차 개정) 2021년에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가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며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음.

[표 2]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 관련 개정 내용 및 연혁

구분	최초	1차 개정	2차 개정
법률	법률 제3373호 1981.2.28. 개정 공포일 시행	법률 제7802호 2005.12.29. 개정 2007. 3. 1. 시행	법률 제18460호 2021.9.24. 개정 2022.3.25. 시행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임면 -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 학교 장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 -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 학교 장 제청	• 공개전형 추가 -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함	• 공개전형에 필기시험 포함 및 시·도 교육감 위탁 실시 의무화 - 신규채용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함 -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야 함 * 일부 예외 가능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46호 2006.6.23. 개정 2007.3. 1. 시행	대통령령 제32546호 2022.3.22. 개정 2022.3.25. 시행
		• 공개전형 실시 세부사항 - 실시자: 임면권자 (교육감 위탁 실시 가능) - 응시자격: 교사자격증 취득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 준용) - 시험방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 필기시험 및 시·도 교육감 위탁 실시 예외 가능 사유 - 필기시험 예외: 채용과목 특성, 평가 방법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필요시 - 위탁 예외: 임용권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거나,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에 실시하는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의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기준

자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내용 정리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필기시험과 이에 대한 시·도 교육감 위탁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원 임용에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러 학교

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신규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5년간 필기시험을 포함하며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신규채용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표 3]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 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 공개전형 - 필기시험 <u>의무</u> - <u>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u> * 시·도 교육감 승인으로 일부 예외 가능	• 공개전형 - 필기시험 <u>재량</u> - <u>필기시험 실시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가능</u> • 복수의 학교법인이 <u>공개전형 공동 실시</u> 가능 • 교원 신규채용 관련 <u>법령 위반 신고 및 조사</u> 가능 • 교원 신규채용 관련 <u>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u>을 받는 경우, <u>5년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 포함</u> 및 <u>시·도 교육감 위탁 실시 명령</u> 가능

자료: 「사립학교법」 현행 해당 조항 및 개정안 정리

개정안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기존 교원 신규채용 절차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확대해왔던 교육의 공공성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자율성)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학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1조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

(교육의 공공성) 또한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제1항과 제6항에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교육제도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아 교육 관련 법률에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헌법재판소, 99헌바63, 2001.1.18.) 및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 2013.11.28.) 주요내용	
• 사립학교의 자율성	- 사립학교는 <u>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u> -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는 비록 「대한민국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31조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임. -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31조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u>기본권임을 확인하고 있음.</u>
• 교육의 공공성	-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6항에서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공교육제도를 전제하면서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함. -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u>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교육 관련 법률들에서는 학교, 교직원,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 학교 및 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음.</u>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대한민국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헌법」 1)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을 살펴보면, 해당 법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특성있는 설립목적에 존중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특수성도 규정하고 있음.²⁾

또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한 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교육에서 입학금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음.⁴⁾

이와 같이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서 도출되어 보장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 공개전형 실시, 교원 신규 채용 관련 법령 위반시 5년간 필기시험 및 시·도 교육감 위탁 실시 등의 보완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학교제도를 규율하는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⁵⁾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개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 대상인 제53조의2제11항이 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에서 필기시험 및 시·도 교육감 위탁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기간은 약 3년⁶⁾으로 개정법에 따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⁷⁾이 청구되었으나, 심리 중인 상황임.

문 의 처
02)6788-5189

5)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헌법재판소, 99헌바63, 2001.1.1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 2013.11.28.) 참고

6) 「사립학교법」(법률 제18460호, 2021.9.24. 개정, 2022.3.25. 시행)

7) 2022.3.22.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2헌마350(학교법인 송암학원 외 567인), 2022헌마351(학교법인 영락학원 외 136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헌법재판소 결정 및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종합하여 필기시험 등 절차 간소화, 채용방식 다양화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필기시험 의무위탁조항)에 대해 헌법소원('22.3.22.) 진행 중 : 2022헌마350(학교법인 송암학원 외 567), 2022헌마351(학교법인 영락학원 외 136)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현행법 입법 과정에서 이미 ‘학교법인 간 공동 출제’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부결된 이력이 있음. - 현행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 중인 상황이며, 잦은 개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학교법인들 공동공개전형의 범위가 모호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문제출제, 시험장 운영 및 인력 등), 부담 주체도 문제임. - 시험 위탁 제도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중검토 - 공개전형에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고, 필기시험을 포함하더라도 위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개정의 중요 이유인 교원 채용의 투명성 담보 등과는 상충됨. - 현행법 개정 후 현재까지 2년 밖에 안 된 법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함.
○ 충청북도교육청: 신중검토 - 채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요소는 반드시 필요함. - 공립 신규교사 채용 절차와 별개의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사립 신규교사 채용을 지원하기에는 인력 및 행·재정적 한계가 있음. - 필기시험을 채용 비리가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한 불이익 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부적절함.
○ 충청남도교육청: 신중검토 - 현행법 입법 과정에서 이미 ‘학교법인 간 공동 출제’의 동일한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부결된 이력이 있음. - 법인 공동출제가 교원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보장이 없고, 현행법이 지난 2년간 안착 중인데, 법률 개정시 오히려 현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공·사립 학생 간 교육권을 균일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현행법이 더 합리적이고, 1차 필기시험 이후에도 충분히 사학이 추구하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중검토**

- 사학법인협회의 공동전형 절차 마련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고 막대한 예산 및 행정력이 이중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음.
- 사립학교법 개정 시행 이후 현 제도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용 시험제도의 도입은 수험생들에게 혼란 및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일부수정**

-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전국을 총괄하는 중앙법인협의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보완이 필요함.